

1. 개정이유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51호, 2021.7.27. 공포, 2022.1.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여객의 안전·보호조치 이행과 관련한 운송플랫폼의 기준을 정하여 안전한 합승 중개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합승을 중개하기 위해 운송플랫폼이 갖추어야 할 여객의 안전·보호조치 이행 기준 규정(안 제11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의 예외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여객이 합승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합승을 중개하는 기능을 갖출 것
2. 여객의 탑승 시점 및 위치, 탑승 가능한 좌석 등의 정보를 사전에 여객에게 고지하는 기능을 갖출 것
3. 자동차 안에서의 준수사항과 위험상황 등의 신고 절차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여객에게 고지하는 기능을 갖출 것
4. 동성(同性) 간의 합승만을 중개하는 기능을 갖출 것(자동차의 종류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형, 소형, 중형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객의 안전·보호조치 이행 및 그 밖에 여객의 안전

- 보호조치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택시운수종사자의 여객 합승 행위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전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스마트실증사업 승인을 받거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받아 택시운수종사자의 여객 합승 행위를 중개하는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제11조의2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0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제49조의18에 따라 등록한 사항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1조의2(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의 예외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u> <u>1. 여객이 합승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합승을 중개하는 기능을 갖출 것</u> <u>2. 여객의 탑승 시점 및 위치, 탑승 가능한 좌석 등의 정보를 사전에 여객에게 고지하는 기능을 갖출 것</u> <u>3. 자동차 안에서의 준수사항과 위험상황 등의 신고 절차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여객에게 고지하는 기능을 갖출 것</u> <u>4. 동성(同性) 간의 합승만을 중개하는 기능을 갖출 것(자동차의 종류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형, 소형, 중형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인 경우에</u>

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객의 안전 ·
보호조치 이행 및 그 밖에 여객
의 안전 · 보호조치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
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